

## 조선시대 적의의 용례와 제작에 대한 고찰

김 소 현\* · 안 인 실\*\* · 장 정 윤\*\*\*

배화여대 전통의상과 교수\* · 배화여대 전통의상과 강사\*\* · 배화여대 전통의상과 겸임교수\*\*\*

### A Study on the Wearing Occasion and Formula of Jeok-Ui in the Joseon Dynasty

Soh-Hyeon Kim\* · In-Sil An\*\* · Jeong-Yun Jang\*\*\*

Professor,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Baewha Women's College\*

Lecturer,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Baewha Women's College\*\*

Lecturer,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Baewha Women's College\*\*\*

(2007. 4. 25 투고)

#### ABSTRACT

In the Joseon Dynasty, a Court Ladies' full dress was granted by the Ming Dynasty. Since the Ming Dynasty had declined, a Court Ladies' full dress, Jeok-ui began to be made by the Joseon Dynasty. It was based on the Chinese Court Ladies' full dress, Desam, but it became Joseon's own style,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Chinese one.

The formula of Jeok-ui was completed in the time of King Yongjo. Since then, Jeok-ui for big ceremonies was called Bub-bok. It was recorded on the Regular rule of Sang-uiwon. The color of Jeok-ui was departmentalized for the wearer; red one for the Queen, bluish black one for the Crown Princess, and purple one for the Queen moth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Jeok-ui for feasts and for big ceremonies. In the case of Jeok-ui for big ceremonies, the pattern of Hyung-bae for the Queen was a dragon with five claws, and for the Crown Princess, a dragon with four claw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Jeok-ui for feasts, the pattern of Hyung-bae was phoenixes for the Queen, Crown Princess and the Queen mother. The number of embroidered round badges, which were attached to Jeok-ui, was 51 for big ceremonies, and 36 for feasts.

The skirt for big ceremonies was a Jeonang-ut-chima with dragons pattern for the Queen, and phoenixes for the Crown Princess. The Queen's skirt for feasts was a Jeonang-ut-chima with phoenixes pattern, and the Queen mother's also. The Crown Princess' was a double skirt with phoenixes pattern. The pearls were not decorated on the shoes for big ceremonies, but shoes for feasts had six big pearls for decoration. When the royal woman wore Jeok-ui for big ceremonies, it was prepared for Kyu, Pe-ok and belt with jade. But those were not necessary for Jeok-ui for feasts.

Key words: Bub-bok(법복), Jeok-ui(적의), Jeok-ui for feasts(상복용 적의), Desam(대 삼), embroidered round badges(수원적), King Yongjo(영조)

## I. 서론

적의(翟衣)는 왕실여성의 최고 예복으로서 왕비, 세자빈, 대비 등 왕실의 적통을 잇는 여인만이 입을 수 있는 예복이다. 왕비의 적의는 왕의 면복(冕服)에 대응하는 옷이기도 해서 법복(法服)이라고도 부른다. 그동안 적의에 대한 연구 성과물들은 법복으로서의 적의에 대한 연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료를 대할 때마다 적의와 법복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면복과 적의를 법복이라고 하지만 면복과 적의의 용례는 동일하지가 않다. 왕은 가례, 제례, 조회 등 대례에만 면복을 착용하고, 대왕대비·왕대비·왕·왕비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승(尊崇)이나 진연(進宴), 진찬(進饌)등의 잔치에는 상복(常服)을 입는데 왕비는 대례는 물론이고 잔치에서도 적의를 입는다. 잔치에 법복을 입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상방정례(尙方定例)』를 세밀하게 검토하던 중 명칭은 적의이지만 용례에 따라 적의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복으로서의 적의와 상복으로서의 적의에 구별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적의의 용례와 제작방법을 중심으로 적의를 살펴보면서 왕실 여성의 예복으로서 적의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에서 의례의 규범을 정할 때면 명나라 제도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대명회전(大明會典)』과 『명사(明史)』여복지(麗服志)를 통하여 명나라 왕실 여성과 내외명부의 복식제도를 검토하여 조선의 제도와 중국 제도와의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명에서 조선왕실에 사여한 여성복식을 『실록(實錄)』으로 확인하고, 『의궤(儀軌)』를 통하여 조선왕실에서 착용한 적의의 실체를 확인하며, 『상방정례(尙方定例)』, 『국혼정례(國婚定例)』,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의 기록을 바탕으로 용례별 적의제작법을 밝히고자 한다.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고종이 황제 위에 오르고 난 후 마련한 심청색 적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II. 명의 여성 관복(冠服)제도

명나라의 예제를 정리한 『홍무예제(洪武禮制)』가 수차례 개정되면서 관복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명나라 후비(后妃) 관복제도와 명부(命婦) 관복제도는 홍무(洪武) 원년(1368)과 3년(1370)에 큰 틀이 잡힌 후 홍무4년, 5년, 24년, 26년에 조금씩 개정되다가 영락(永樂) 3년(1406)에 황빈관복(皇嬪冠服)을 제외한 명나라 왕실여성의 복식제도가 완성되었다.<sup>1)</sup> 가정(嘉靖)10년(1531)에는 황빈관복의 제도가 개정되었다.<sup>2)</sup>

중국예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례(周禮)』에 의하면 주대(周代)에 왕후·명부의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으로 육복(六服)이 있었다. 육이라는 숫자가 음수(陰數)의 중앙에 있으므로 왕후에게 육복을 갖추게 한 것이다. 육복 중 휘의(緇衣), 유적(褕翟), 궐적(闕翟)은 삼적(三翟)이라고 하여 제복(祭服)으로 사용하였고, 국의(鞠衣), 전의(展衣), 단의(祫衣)는 三衣라고 하여 공복(公服)이나 상복(常服)으로 사용하였다.<sup>3)</sup> 휘의는 하늘[天]의 색인 현(玄) 바탕에 휘문(翟文)을 채각(采刻)하고 오채(五采)로 그림을 더하는데<sup>4)</sup> 휘(翟)의 수를 12로 한 것은 왕복의 12장(章)과 동일한 것이다. 유적은 나무[木]의 색인 청(青) 바탕에 적문(翟文)을 각(刻)하고 오채로 그림을 더하는데 적(翟)의 수는 휘의와 같다. 궐적(闕翟)은 불[火]의 색인 적(赤) 바탕에 적문(翟文)을 각하고 그림을 더하지 않는데 궐(闕)이란 그림이 빠졌다는 뜻으로 적조만 하고 그림을 더하는 섬세한 뒷손질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의(鞠衣)는 친잠복(親蠶服)으로 황색(黃色) 바탕에 무늬가 없다. 황은 중앙색으로 천하의 중앙을 얻는다는 뜻이며 새로 듣는 뽕잎의 빛깔이다. 전의(展衣)는 왕을 예견하고 잔치에서 빈객을 맞이하는 옷으로 순백색에 무늬는 없으며 백색은 정결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단의(祫衣)는 연거복(燕居服)으로 순흑색이며 무늬가 없고 훈색(纁色)의 선을 들렀다.<sup>5)</sup>

이러한 주례의 틀이 기본이 되어서 각 왕조별로 여자의 관복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착용사례는 대개 조복, 제복, 수책(受冊) 등에 착용하는 대사복(大事

服), 친잠복(親蠶服), 연거복(燕居服) 등이었다. 수대(隋代)의 황후복은 휘의(緝衣), 국의(鞠衣), 청복(青服), 주복(硃服)의 네 종류로서, 휘의는 제사(祭祀)와 조회(朝會)에 착용하는 대사복의 용도를 가졌고, 국의는 친잠복, 청복(青服)은 황제를 예견할 때, 주복(硃服)은 연회에서 빙객을 맞을 때의 용도로 착용하였다.<sup>6)</sup> 당대(唐代) 무덕령(武德令)으로 제정된 황후복은 휘의, 국의, 전채예의(鉏釵禮衣)의 3가지이다. 휘의는 대사복, 국의는 친잠복, 전채예의는 연회에서 빙객을 맞을 때의 용도로 착용하였으며 전채예의에는 치문(雉文)과 패수(佩綬)를 제하고 잡색을 사용하였다.<sup>7)</sup> 송대의 황후복으로는 휘의(緝衣), 주의(朱衣), 예의(禮衣), 국의(鞠衣)가 있다.<sup>8)</sup> 수대의 청복(青服)과 주복(硃服)이 당대에 전채예의로 통합되었다가 송대에 다시 복구된 것이다. 명대에는 예복(禮服)과 상복(常服)의 2종류가 있어서 예복은 책봉을 받을 때, 종묘나 사당에 배일할 때, 조회에 입는 대사복(大事服)으로 착용하고, 상복(常服)은 연거시(燕居時)에 착용하였다.<sup>9)</sup>

적문이 들어간 대사복을 가리키는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만 적문 12등이 들어간 황후의 대사복을 휘의라고 부른 것은 명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수대에는 착용자의 신분과 문양의 차이에 따라 휘의(緝衣), 유적(褕翟), 궐적(闕翟) 등으로 불렸다. 황후의 대사복은 휘의라고 하고, 요적(搖翟)<sup>10)</sup> 9등을 직성한 황태자비의 대사복 · 요적을 수놓은 공주 · 왕비 · 삼사(三師) · 삼공(三公) · 공(公)부인의 적문9등, 후(侯)부인의 적문8등, 백(伯)부인의 적문7등, 귀비(貴妃) · 덕비(德妃) · 숙비(淑妃) 등 삼비(三妃)의 대사복은 유적(褕翟)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빈(九賓)의 대사복 · 자(子)부인 · 4품명부의 적문6등 · 남(男)부인 · 5품 명부의 적문5등을 궐적이라고 하여 적문(翟文)을 각하여 옷에 불였다.<sup>11)</sup> 당대에는 요적 9등을 직성한 황태자비의 대사복을 유적(褕翟)이라고 하였으며, 적문을 수놓은 내외명부의 대사복은 적의(翟衣)라고 하여서 1품의 적문9등으로부터 5품의 적문5등에 이르기까지 품계에 따라 적문의 수를 줄였다.<sup>12)</sup> 송대에는 요적9등을 직성한 황태자비의 대사복과 요적9등을 수놓

은 비의 대사복을 유적이라고 하였으며, 적문을 수놓은 내외명부의 대사복은 적의(翟衣)라고 하였다.<sup>13)</sup> 명대에는 적문이 들어간 예복을 적의라고 통칭하면서 12등 황후의 적의는 휘의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홍무4년의 복제개정을 통하여 군신의 면관제도를 없애고 외명부의 적의제도를 없었으며<sup>14)</sup> 그 후로 황후, 황태자비 등 황실여성의 예복에서만 적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명나라의 후비관복에 대한 상세한 제도를 영락 3년에 제정한 바로 살펴보면 황후 예복은 구룡사봉관(九龍四鳳冠), 적문 12등의 심청색 적의(翟衣), 옥색 중단(中單), 심청색 폐슬(蔽膝), 옥곡규(玉穀圭), 옥혁대, 대대, 수(綬), 옥패(玉佩)2, 청말(青襪), 청석(青舄)으로 구성된다.<sup>15)</sup> 명나라 효각(孝恪)황후 초상인 <그림 1>에서 대사복을 착용한 황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2>는 상복을 입은 명 효의장황후(孝懿蔣皇后)상이다. 황후 상복은 쌍봉의룡관(雙鳳翊龍冠), 황색 대삼(大衫), 심청 하피(霞帔), 용문을 새긴 옥추자(玉墜子), 심청색 사규오자(四襟襖子), 홍색 국의(鞠衣), 황색 연선오자(緣襖襖子), 홍색 연선군(緣襖裙), 옥대, 옥화채결수(玉花采結綬), 패제(佩制)에 해당하는 백옥운양정당(白玉雲樣訂璫) 2, 청말, 청석으로 구성된다.<sup>16)</sup> <그림 2>는 쌍봉의룡관을 쓰고, 걸에서부터 심청색 하피, 황색 대삼, 홍색 국의를 착용한 모습이다.



<그림 1> 명, 효각황후상,  
예복(출처: 黃能毅 ·  
陳娟娟, 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p. 340)



<그림 2> 명,  
효의장황후상, 상복(출처:  
中華五千年文物集刊,  
中國服飾5000年 下,  
p. 374)

황태자비 예복은 구휘사봉관(九翟四鳳冠), 적문 9등의 심청색 적의(翟衣), 옥색 중단(中單), 심청색 폐슬(蔽膝), 옥곡규(玉穀圭), 옥혁대, 대대, 수(綬), 옥폐(玉佩)2, 청말(青襪), 청석(青舄)으로 구성된다.<sup>17)</sup> 상복은 연거관, 흥색 대삼, 심청색 하피, 봉문을 새긴 옥추자, 도홍색 사규오자, 청색 국의, 대대, 청색 연선오자, 흥색 연선군, 옥대, 옥화채결수, 백옥운양정당(白玉雲樣玎璫) 2, 청말, 청석이 있다.<sup>18)</sup>

친왕비(親王妃) 예복은 구적관(九翟冠), 대삼 하피, 사규오자, 국의, 옥곡규, 옥혁대, 옥화채결수, 옥폐2, 청말, 청석으로 구성된다. 대삼은 저(絳) 사(絲) 사(紗) 라(羅)를 쓰고 대홍색으로 하며, 하피는 심청색 바탕에 운하봉문(雲霞鳳文)을 금으로 수놓고, 저사사라를 쓰며, 금추자(金墜子)에는 봉문을 새겨 넣는다. 사규오자 즉 배자는 도홍색(桃紅色)이며 단봉문(團鳳文)을 금으로 수놓고, 저사사라를 쓴다. 국의는 청색으로 심의제와 같으며 흥배는 금수를 놓은 운봉문을 한다. 저사사라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색을 쓸 수 있지만 황색은 금하며, 연거복(燕居服)에는 무늬가 없는 소(素)를 사용한다. 그밖에 대대, 옥곡규, 옥혁대, 옥화채결수, 옥폐, 청말, 청석을 갖춘다.<sup>19)</sup> 친왕비 상복은 흥무4년에 황비의 것과 동일하게 제정한 이후로 개정한 바가 없다.

흥무 3년에 제정된 황비 상복은 2가지이다. 난봉관(鸞鳳冠), 난봉을 금으로 수놓은 황색을 제외한 여러 가지 색의 단삼(團衫), 금옥서대를 일습으로 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상복은 가빈화전(假鬢花鉢)을 한 산송특계(山松特髻) 또는 화채봉관(花釵鳳冠), 진홍대수의(眞紅大袖衣) 하피, 홍라군(紅羅裙), 홍라배자(紅羅褶子)로 구성되는데 의(衣)에 봉문(鳳文)을 직금하거나 수놓은 것이다.<sup>20)</sup>

영락 3년에 제정된 세자비(世子妃) 관복은 친왕비관복과 동일하지만 관은 칠적을 썼다.<sup>21)</sup> 군왕비(郡王妃) 관복도 친왕세자 관복과 동일하여 칠적관, 대삼, 하피이고, 연거시의 복식은 친왕비와 동일하게 갖추지만 수(繡) 문양으로 반봉문(盤鳳文)을 쓰지 못하고 운하적문을 썼다.<sup>22)</sup> 영락3년에 제정된 군왕비관복은 『大明會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sup>23)</sup>

명부관복은 흥무원년에 품계에 따라 적문의 수를

1품 9등, 2품 8등, 3품 7등 등으로 차등을 두는 적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흥무 4년에 외명부의 적의 제도를 폐지하면서 가빈화전을 한 산송특계, 진홍대수의, 주취축금하피(珠翠蹙金霞帔)를 조복(朝服)으로 하고, 주취각관(朱翠角冠) 금주화채(金珠花釵) 활수잡색녹연(闊袖雜色綠緣)을 연거복(燕居服)으로 정했다. 흥무5년에는 명부1품이 예복에 산송특계(山松特髻)를 하고 특계에 금적(金翟)을 올리고, 진홍색 대수삼(大袖衫), 운하적문을 금으로 수놓은 심청색 하피와 배자, 꽃을 새긴 금추자를 쓰도록 했으며 상복으로는 주취경운관과 장오장군(長澳長裙)을 정하였다. 또한 홍라(紅羅)로 만든 단삼(團衫)의 제도를 예복으로 정하여 1품은 중치(重雉)를 9등으로 수놓고, 2품은 8등으로 수놓도록 했다.<sup>24)</sup> 내명부관복은 3품 이상이 화채(花釵) 적의(翟衣), 4품·5품은 산송특계와 대삼을 예복으로 삼으며, 귀인은 3품으로 견주어 황비의 연거관(燕居冠), 대삼, 하피를 예복으로 하고, 주취경운관(珠翠慶雲冠), 국의, 배자, 연선오군(緣襍襍裙)을 상복으로 하였다.<sup>25)</sup> 흥무 24년에는 공후백부인(公侯伯夫人)과 1품의 예복에 저사사라를 사용한 진홍색 대수삼, 하피 배자에는 심청색 단(段)을 쓰고 운하적문을 금으로 수놓으며, 추자에는 운하 화금(花禽)을 새기고, 홀은 상아로 만들며,<sup>26)</sup> 명부 상복은 안색(顏色) 원령삼(圓領衫)으로 정했다.<sup>27)</sup> 흥무26년에 제정된 명부 1품의 관은 금사건(金事件), 주적(珠翟) 5, 주목단개두(珠牧丹開頭) 2, 주반개(珠半開) 3, 취운(翠雲) 24편(片), 취목단엽(翠牧丹葉) 18편, 취구권(翠口圈) 1부(副), 상대금보전화(上帶金寶鉢花) 8, 금적(金翟) 2, 구함주결(口銜珠結) 2이며, 운하적문을 갖춘 하피와 배자, 삼화금추자를 하였다.<sup>28)</sup>

### III. 조선의 왕실여성 관복제도

조선에서는 예로부터 착용해오던 복식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명에 대한 청사(請賜)와 사여(賜與) 관계를 고려하여 왕실여성의 관복제도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에는 명에서 사여한 왕비 관복을 원형 그대로 착용했으며 명이 망하고 청이

들어선 후에도 청의 관복을 수용하지 않고 명의 제도를 따랐다. 세월이 지나면서 명에서 사여한 관복이 없어지자 국내에서 지어 입거나 그 부속품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갖추게 되면서 점차 조선식으로 변화한 관복제도를 운영하였다.

조선에서는 왕실 여성의 관복을 적의, 명복(命服), 예복(禮服) 등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명에서는 홍무4년에 외명부의 적의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명에서 사여한 왕비관복을 적의라고 할 수는 없다. 명나라에서 조선의 왕에게 친왕례에 준하는 면복 구장을 사여하면서 왕비에게는 친왕비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문으로 남지만 분명한 사실은 왕비의 관은 군왕비의 칠적관, 의복은 공후백부인을 포함한 명부1품에 준하는 옷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듯하다. 선조35년에 인목 왕후를 계비로 들이는 가례를 준비하면서 적의 제도를 상고하다가 비로소 명에서 사여한 왕비관복이 친왕비와 군왕비의 예에 비추어볼 때 온전하게 갖추어진 물복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다.<sup>29)</sup>

중국에서 조선에 사여한 왕비 관복에 대하여 『명사』에는 태종 방원에게 면복 구장(九章)과 더불어 비(妃)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하피, 금추 및 서적과 옷감표리를 주었다는 기록<sup>30)</sup>이 있을 뿐이고, 『실록』의 왕비 사여품목에도 적의라는 기록은 없다.<sup>31)</sup> 그러나 조선에서는 사여 받은 왕비 관복을 왕의 면복에 대응하는 옷으로 여겨서 적의로 인식했다. 고려 공민왕 19년(1370)에 명으로부터 받은 칠휘이봉관(七翫二鳳冠)과 청색의 9등 적의는 명나라의 복식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송의 제도를 따른 것이었겠지만 송의 후비복식제도는 황후, 황태자비, 명부의 제도만 규정되어 있어서 고려의 왕비관복을 어느 품계에 준하여 사여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황태자비의 복식제도와 명부 1품의 복식제도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친왕비의 복식제도 역시 동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명 태조(太祖) 효자황후(孝慈皇后)가 사여한 왕비 관복은 송의 친왕비례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효자황후가 고려에 사여한 왕비관복을 송대 명

부 1품의 복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전례로 삼아 조선에 왕비관복을 사여할 때면 명나라 명부 1품의 복식제도를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명에서 조선에 사여한 왕비관복의 물목을 살펴보면 대삼, 배자, 하피, 상아흘이 일습을 이루고, 단삼, 오, 군이 일습을 이룬다. 관은 군왕비의 것에 준하는 칠적관이고 의복은 군왕비 예복에서 국의, 대대, 혁대, 수, 옥패 등이 빠진 명부 1품의 예복이다. 명나라 명부의 예복은 홍무24년, 26년에 개정된 바, 1품은 진홍색 대수삼, 심청색 하피, 심청색 배자, 상아흘로 구성되었다.<sup>32)</sup> 명부관복의 상복은 안색(顏色) 원령삼(圓領衫)으로 정했다. 안색을 제색(諸色)으로도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빛깔 있는 색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사여된 왕비 관복의 물목은 관을 제외하면 바로 이 제도에 준하는 것이었다.

## 1. 관

명나라 명부예복의 관은 산송특계이고, 상복의 관은 주취각관인데 우리나라에는 주취칠적관 한가지가 사여되었다. <그림 3-①>은 기양왕 이문충원배조국부인 필씨상으로 친왕비례에 따르는 관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 3-②>는 임희후 이방진부인 양씨상으로 공후백부인과 명부 1품의 예복제도에 해당하는 의복을 입고 주취 7개와 금적 2개를 장식한 송산특계를 했다.<sup>33)</sup> 명부 1품 나개부인상인 <그림 3-③>과 주부인상인 <그림 3-④>는 주취 5개와 금적 2개를 장식한 관을 쓰고 있으나 형태는 다르다. 나개부인은 예복을 입었고, 주부인상은 상복을 입었으므로 관의 형태가 다른 것이다. 명부복식제도는 홍무26년에 개정된 이후로 변화가 없었으므로 우리나라에 사여된 관이 명부1품의 관이라면 홍무26년에 제정된 주적 5개를 장식한 관이어야 하겠으나 7적관이므로 명부의 관은 아니다. 『명사』나 『대명희전』에도 명부의 관을 적관이라고 기재한 곳은 없다. 그러므로 왕비에게 사여한 칠적관은 군왕례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형태는 어떠했을까?

『세조실록』에 의하면 세조대에 왕비관복의 사여가 있었던 듯하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고



〈그림 3〉 ① 歙陽王 李文忠元配曹國夫人 畢氏像 ② 臨淮侯李邦鎮夫人 楊氏像 ③ 1품 那玠夫人像 ④ 1품 朱夫人像  
(출처: 黃能馥·陳娟娟, 1999, p. 349, p. 356, p. 357, 徐湖平主編, 明清肖像畫, 2003, p. 48)

물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사여받은 관의 착용법을 궁금해 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하사(下賜)한 중궁(中宮)의 관(冠)은 좀 고작으며 또 비녀가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하니, 윤봉 등이 말하기를, “머리를 벗은 뒤에 이마의 뒤를 따라 좌우로 머리를 갈라 서로 위로 붙잡아 매어 아계(丫髻)를 만들고, 관을 그 위에 쓰고 그대로 비녀를 꽂습니다.”하였다. “명복(命服) 가운데 또한 보전(寶鉏) 같은 물건이 있는데,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하니, 윤봉 등이 대답하기를, “그 이름을 금보(禁步)라고 하는데, 두 어깨에서 앞으로 드리워서 그 보행(步行)을 절제하여 함부로 걷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수식(首飾)의 제도는 중국에 입조(入朝)하였다가 돌아온 침찬비(執爨婢)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sup>34)</sup> 또한 『선조실록』의 기사에서 『오례의』에는 왕비 가례시 ‘적의에 수식(首飾)을 가한다’고 하였으니 수식을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사여받은 관도 수식을 가하여 형태를 완성하는 것이었으므로 수식을 우리나라에서 제작했다고 보는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왕비의 예장을 묘사할 때 줄곧 ‘적의에 수식을 가한다’고 한 것은 완성된 관모를 쓰는 것이 아

니라 장식을 통해서 관의 형태를 완성한다는 기본 개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2. 의복

예복 일습을 이루는 대삼, 배자, 하피, 상아홀을 갖춘 모습은 〈그림 3-①, 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3-③〉은 예복을 입었으나 훌을 갖추지 않은 모습이다. 이들 그림에 보이는 대삼은 『대명회전』에 규정된 대수삼과는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인다. 명부 예복을 의복의 형태와 상관없이 대수의라고 불렸기 때문에 형태적인 통일을 위하여 『대명회전』에서 대수삼을 규정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선에 사여한 왕비대삼은 황실에서 내리는 것이었므로 『大明會典』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④〉는 명부 1품의 상복으로 단삼, 오, 군이 일습을 이룬다.

명의 제도는 여성관복을 예복과 상복으로 구별하였으나 조선왕실에서는 그런 구분을 두지 않았다. 왕비 대사복은 적의, 법복, 명복(命服) 등으로 부르고 왕세자빈의 경우에는 명복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적의는 의복의 명칭 또는 대례복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법복은 영조 정순후가례(1759년)에

의대와 구별하여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명복이란 각 계급에 따른 일정한 제복(制服)<sup>35)</sup>이라는 의미이지만, 조선에서는 역대가례도감의궤 반차도에 적의제 구를 운반하는 가마를 명복채여(命服彩輿)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법복을 명복이라 칭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36)</sup> 그러나 명복이 꼭 법복을 지칭한 것 이 아니라 법복보다 큰 개념으로서 지위와 사례에 맞는 왕실복식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본다.

명나라 황후·황태자비의 예복과 상복에 폐옥, 대, 규가 따르듯이 비·빈의 적의, 원삼, 홍장삼에 폐옥, 대, 규가 따랐으며<sup>37)</sup> 예복과 상복이라는 관복의 규정은 없으나 용례에 따라 각 의복을 구별하여 착용했다. 또한 중국에서 사여한 복식의 명칭과 조선의 왕실여성이 착용한 복식의 명칭에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 고유 복식을 착용하는 전통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의관(衣冠)과 예도(禮度)를 모두 중국 제도에 따르면서 여복(女服) 한 가지 일은 아직 예전 풍습을 그대로 따릅니다.”<sup>38)</sup>라는 기록이 그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준다. 명의 제도를 우리의 복식제도에 적용하면서 점차 새로운 복식전통을 일구어냈다고 할 수 있다.

#### IV. 착용사례로 본 조선왕실의 적의

여성의 관복제도를 규정한 문헌은 없으나 의궤, 일기류, 『국흔정례』, 『상방정례』 등을 통하여 의복의 종류와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전기에는 명나라에서 사여한 대삼, 하피, 배자, 금추자 등을 왕비예복으로 착용하였으나 인목왕후 가례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옥폐, 수, 대대, 혁대, 규 등 명나라 친왕비 예복의 일습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 후 인조장열후의 가례 때에 옥대, 폐옥, 규, 후수 등 빠져있던 부속품을 갖추었다.

명이 망한 후 1627년에 가례를 치룬 소현세자의 가례도감의궤에는 명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조선의 적의제도를 만들어가는 상황이 잘 담겨있다. 소현세자빈의 의대에는 노의(露衣), 흥배겸장삼(胸背綢長衫), 중삼(中衫), 활한삼(瀾汗衫), 말군, 저고리,

단저고리, 호수(胡袖), 치마, 삼아(衫兒), 니의(裏衣), 적의, 겹대삼(祫大衫), 단삼(團衫), 겹오(祫襖), 겹군(祫裙), 하피, 폐옥, 적말(赤襪), 적석(赤舄), 경의(景衣)가 있으며 체발(髢髮)을 갖추었다. 아청필단 적의와 대홍필단 겹대삼을 각각 갖추었는데 적의의 겉감 소요량은 무문아청필단 25척 6촌이고, 관자(貴子)처럼 생긴 36편의 수(繡)를 붙이도록 하여서 배자를 대신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1638년 인조장열후[왕비] 가례에는 대홍필단으로 된 대삼, 아청사로 된 배자를 적의의 구성요소로 기록하고 있으나 겉옷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조선에 사여된 왕비관복의 물목을 살펴보면 대삼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으나 배자에는 권금적계문(圈金翟鶴文)을 수놓았기에 조선에서 36편 수원적을 배자에 붙였을 가능성이 높고 수원적의 바탕감이 배자의 소재인 모단인 점으로 미루어 배자를 적의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삼에 운봉홍배를 갖춘 것으로 기록되었어도 대삼을 적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651년 현종명성후[세자빈] 가례에는 아청화문필단 적의, 대홍화문필단 별의(別衣), 대홍화문필단 내의(내의)를 적의의 구성요소로 갖추었다. 간혹 내의가 빠지는 경우가 있으나 적의, 별의, 내의로 이루어지는 구성체계가 지속되다가 1749년(영조 25)에 편찬된 『국흔정례』와 1752년(영조 28)에 편찬된 『상방정례』에서 적의, 내의, 별의, 수, 폐슬, 대대, 하피, 상, 면사, 폐옥, 규, 옥대, 말과 석을 갖춘 법복제도로 정리되었다.

한편 역대 가례도감의궤에는 가례를 행하기에 앞서 그 이전에 행해진 가례에 등록된 물목을 점검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丁未(1727년) 진종효순후 가례를 준비하면서 병자(1696년) 경종 단의후가례를 점검한 謄錄付(등록부)措備物目(조비물목)과 甲子(1744년) 장조현경후 가례를 준비하면서 戊戌(1718년) 경종 선의후가례를 점검한 등록부조비물목에는 적의의 구성요소로 겹배자, 겹대삼, 단삼, 겹오, 겹군, 여관자수 36편, 폐옥, 적석[재료는 모단], 말, 온혜, 경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행 물목은 적의, 겹장삼, 원삼, 겹오, 겹군, 별의, 하피, 纓,

폐슬, 대대, 흑말, 흑석, 온혜, 경의 등으로 차이가 있다.<sup>39)</sup> 등록부조비물목은 명으로부터 사여 받은 왕비관복의 물복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조선의 적의제가 명의 사여관복에 준하여 제정되었음을 시사해준다. 적의가 등장하면서 배자를 감하게 된 것은 적의가 배자를 대신한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역대 왕비가례도감의궤에 의하면 숙종대부터 대 삼체에 근거하는 적의제도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81년 숙종 인현후 가례에 다흥색 적의를 제작하였고, 1702년 숙종인원후 왕비 가례에도 대홍색 적의를 제작하였으며, 전삼후사(前三後四)의 상(裳), 즉 전행웃치마도 숙종 인현후가례부터 마련되었다.

숙종대에 왕실복식제도의 틀을 바로잡아가는 모습은 『증보문헌비고』에 기록되어 있다. “숙종 13년에 오례의와 대명회전을 참고로 하여 진어할 관복을 개정하게 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적의는 오례의에 제도를 말하지 아니하였고 홍색바탕으

로 한 것은 대명회전의 청색과 다른데 적문(織文)은 적(翟)이 아니고 봉(鳳)과 같으며 앞면에 여섯 등, 뒷면에 아홉등인 것도 대명회전의 아홉등과 다르다. 관에 수식을 쓰지 않은 것은 대명회전의 구휘(九翫), 사봉(四鳳), 구적(九翟)등의 관과 다르며 적의관(翟衣冠)은 오례의에 기록된 바가 없으니 마땅히 회전집례에 따라 개정한 것이나 명나라 제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중국조정의 비단의 빛깔과 품질과 척도가 우리나라와 아주 다르므로 다만 글과 그림에 의거하여 고쳐야하니 그릇됨을 면치 못할까 두렵다. 대대가 가장 예제에 어긋나는 것 외에는 가볍게 의논하기가 어렵다.”<sup>40)</sup> 이것은 조선의 적의제도가 명나라의 예제를 참고하였으나 그대로 실행되지 않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전부터 내려오던 적의제를 여러모로 검토하여 숙종대에 비로소 대삼체에 근거한 적의를 마련했으며 이후 영조대에 『국훈정례』와 『상방정례』를 통하여 적의 제도를 완성하였다. 가례에 착용하는 적의를 범복이라고

〈표 1〉 상방정례에 나타난 가례시 적의와 진연, 존승시 적의의 구성 및 소요량의 차이

(\*은 국조속오례의보에 근거함)

중궁전		빈궁		대왕대비전	
	법복	진연·존승	법복	진연·존승	
적의	대홍향직35척 내공 대홍향직5척5촌	대홍향직35척 내공 대홍향직5척5촌	아청향직35척 *혹단으로 한다 내공 모단6척	아청향직35척 내공 모단6척	자적향직35척 내공 자적향직5척5촌
蔽膝	대홍향직1척6촌	대홍광직1척6촌	대홍광직2척	대홍광직1척6촌	자적향직1척6촌
하퍼	모단6척	모단7척5촌	모단6척	모단7척5촌	모단7척5촌
裳	前三後四 남향직 34척 내공 백방사주24척 영자 대홍향직2척7촌 *직금 용스란	前三後四 남향직33척5촌 내공 백방사주24척 영자 대홍향직2척7촌	前三後四 남향직28척 内공 백방사주19척 영자 대홍향직2척7촌 *직금 봉스란	挾裙 남향직33척5촌 내공 백방사주24척 영자 대홍향직2척7촌	前三後四 남향직33척5촌 내공 백방사주24척 영자 자적향직2척7촌
繡	대홍광직5척5촌 *수원적 51	대홍광직2척5촌	모단 2척5촌 *왕비복과 동일	모단 2척5촌	자적향직2척5촌
흉배	*오조원룡보	대홍흉배左右肩 鳳具1部	*사조원룡보	아청흉배 좌우견 봉 구1부	자적흉배 좌우견 봉구 1부
襪	대홍廣의3척5촌 내공 남라 4척	대홍廣의1척1촌 내공 대홍주2척2촌	모단 2척5촌 내공 남라2척	모단 1척1촌 내공 남라2척2촌	대홍광직1척1촌 내공 남주2척2촌
舄	赤舄1부 진주를 뺀다	大真珠 6枚具	흑석1부 진주를 뺀다	대진주 6매구	대진주 6매구
珮玉	폐옥 1건		폐옥 1건		
圭	백옥규 1부 대홍광직으로 쌌다		청옥규 1부 대홍광직으로 쌌다		
珮玉帶	화옥대 1부		화옥대 1부		

부른 것은 영조대부터이다.

『상방정례』에는 대비·중궁·빈궁이 진연이나 존숭에 착용하는 의복을 적의라고 하고, 가례에 착용하는 적의는 법복이라고 하여 상복으로서의 적의와 대례복으로서의 적의를 구분하고 있다. 왕의 면복과 강사포를 법복에 포함하고 있음을 볼 때 법복으로서 적의를 착용하는 사례는 왕이 법복을 착용하는 사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영조 27년(1751)에 편찬한 『국조속오례의보』에는 왕비와 세자빈의 법복에 대하여 『상방정례』나 『국훈정례』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상세하게 보충하여 기록하였다. 이들 기록을 바탕으로 법복용 적의와 상복용 적의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표 1>로 정리하였다. 왕비법복에는 오조원통보, 세자빈 법복에는 사조원통보를 붙이며 상복용 적의에는 왕비, 세자빈, 대비 모두 봉황보를 단다. 왕비법복에 따르는 전행웃치마의 스란단은 용문이고, 세자빈 용은 봉문이다. 상복용 적의에 따르는 전행웃치마의 스란단은 보의 문양으로 미루어 볼 때 봉스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자빈의 상복용 적의에는 전행웃치마가 아닌 겹군을 갖추었다. 왕세자빈의 법복에 전행웃치마를 갖춘 것은 『상방정례』의 편찬 때부터이고 그 이전까지는 겹군을 갖추었다. 상복용 적의에는 대진주 6개를 장식한 석을 갖추지만 법복용 석에서는 진주를 제거하며, 상복용 적의에는 법복과 달리 옥대, 패옥, 규를 갖추지 않았다.

『국조속오례의보』에 따르면 왕비 예복에 수 51편을 붙인다고 하였다. 왕비법복에 붙이는 수 36편이 51편으로 변화하는 시기는 숙종대이다. 『증보문헌비고』에 “앞면에 6등, 뒷면에 9등의 수편이 놓인 숙종 13년의 적의”를 언급한 것은 수 51편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다. 앞서 숙종 7년(1681)에 치러진 숙종 인현후 가례에 마련한 대홍색 적의에 수의 바탕감이 2배가량 늘었다. 왕비법복에 소요되는 수의 바탕감은 5척5촌, 상복용 적의에는 2척5촌이며, 빈궁의 법복과 상복에는 모두 왕비법복에 소요되는 분량의 1/2가량인 2척 5촌을 필요로 한다. 소요량으로 볼 때 수의 개수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되지 만 1866년 고종명성후가례[왕비]와 1882년 순종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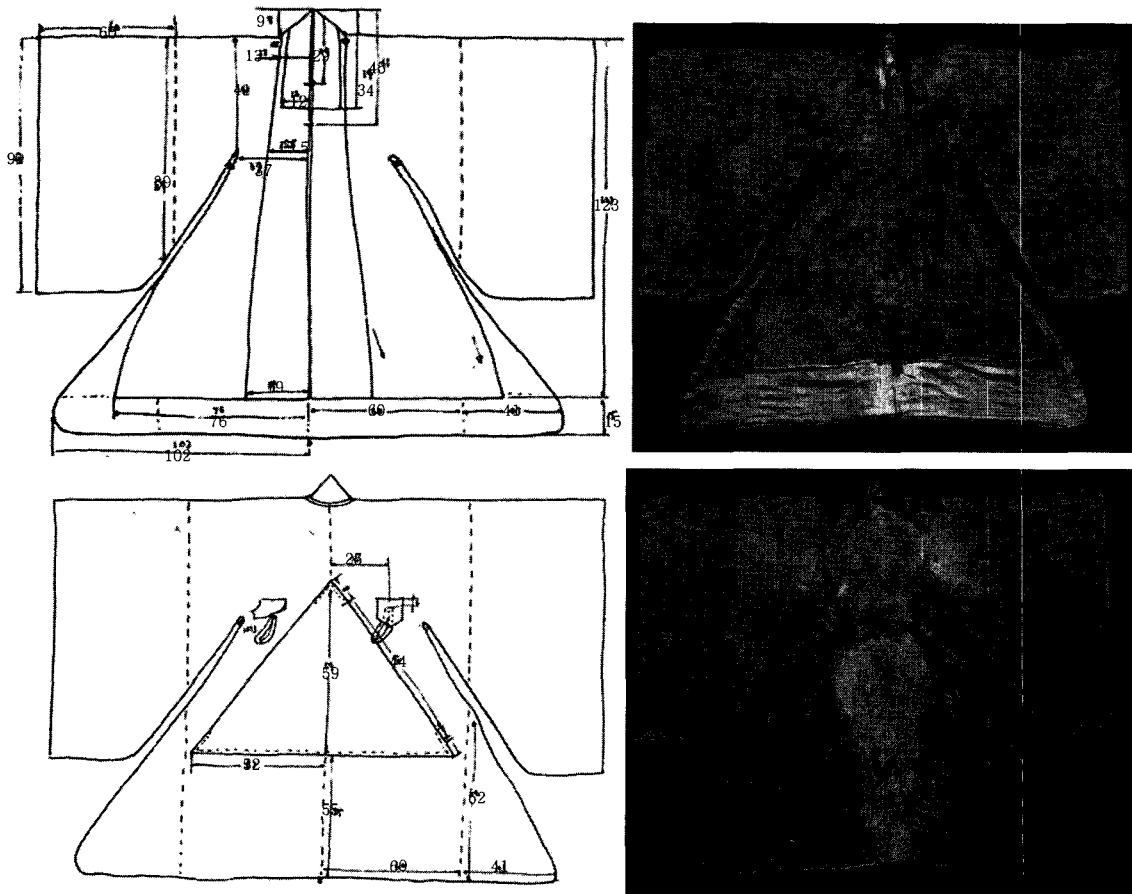
명후가례[세자빈]에 마련한 적의에는 모두 51편을 갖추었다.<sup>41)</sup> 또한 『국조속오례의보』에 세자빈 예복의 수원적은 왕비복과 동일하다고 하여서 51편임을 암시하고 있다. 왕비의 수원적이 36편에서 51편으로 변화하는 시기는 숙종 인현후 가례이지만 세자빈의 경우에는 수원적의 소요량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영조 20년(1744)에 있었던 장조현경후 『가례도감의궤』에도 36편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1751년, 『국조속오례의보』의 편찬 이후에 비로소 세자빈 법복에 51편의 수원적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자빈 용 수원적의 소요량에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크기를 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복용 적의에 붙이는 수원적은 법복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왕세자빈의 법복에서처럼 수원적의 크기를 줄였을 가능성과 개수에 차이를 두어 36편을 달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크기를 줄일 경우, 왕세자빈의 법복용 적의와 상복용 적의가 구별되지 않으므로 개수를 줄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수원적의 문양은 평무늬가 아닌 봉황문이며<sup>42)</sup> 인조장열후 가례도감의궤에 보이는 <그림 6>의 문양 역시 봉황문으로 추정된다.

## V. 적의 소요량으로 본 적의의 형태

조선의 적의제도는 중국에서 사여한 왕비관복을 근거로 운영하다가 차츰 『대명회전』의 여자관복제도를 참고하여 완성해갔다. 명이 망하고 난후 인조대에 마련한 왕비 적의와 세자빈 적의는 배자가 중심이 되었으나 숙종대에 마련한 적의는 명나라 여성예복인 대수삼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중국의 여성관복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적의를 마련했던 상황으로 볼 때 『대명회전』에 기록된 대수삼의 규격은 적의를 제작하는 시방서가 되었을 것이다.

중국의 강서성(江西省) 남창(南昌) 우정왕부인(字靖王夫人) 오씨(吳氏)묘에서 출토한 대수삼은 조선의 적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4>는 명 태조의 16째 아들 주권(朱權)의 손자 주존(朱尊)의 부인 오씨묘에서 출토한 대수삼으로<sup>43)</sup> 『대명회전』에 규정된 대수삼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림 4〉 강서성 남창 우정왕부인 오씨묘 출토 대수삼, 도식화  
(출처: 趙豐 (2002). 紡織品考古新發現. 藝紗堂/服飾出版, pp. 176-79)

『대명회전』에 기록된 대수삼의 규격은 명대의 관면(冠冕)에 사용한 척도인 1자=32cm<sup>44)</sup>를 대입하여 어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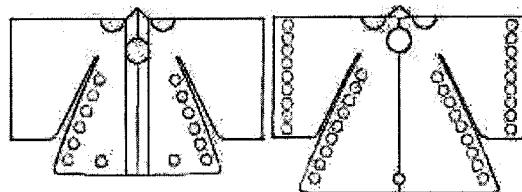
규정에 의하면 대수삼의 깃너비는 3치, 양쪽 깃은 곧게 1자 길이로 내려오며, 사이사이에 단추를 3개 달았다. 앞길이는 4자 1치 2푼(131cm), 뒷길이는 5자 1치(163cm), 안은 9치 8푼으로 하였다. 걸을 때는 뒤를 접어 올리는데 끝에 단추 2개를 달아서 단추 덮개 아래에 두고 절할 때는 풀어 놓았다. 소매 길이는 3자 2치 2푼(106cm), 진동폭은 1자(32cm), 수구너비는 3자 5치(112cm), 남은 것을 겪어 올리는 낙접(落摺)이 1자 1치 5푼이다. 단추 덮개 둘은

삼(杉)의 재료로 만드는데 뾰족한 부분을 연결한 연첨(連尖)의 길이는 2치 7푼, 너비는 2치 5푼이며 깃 아래 1자 6치 9푼 되는 곳에 단다. 단추 덮개 아래에 단추고리를 하나씩 달고 뒷자락의 나머지 부분을 접어 올려서 단추로 고정시켰다. 주머니[兜子] 역시 대수삼의 재료로 만들었으며 양 조각을 어슷하게 재단하여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평평하게 하였다. 연첨의 길이는 1자 6치 3푼이며, 주머니의 아래 평평한 곳은 너비가 1자 5치로 봉합하여 깃 아래 1자 7치 되는 곳에 달았다. 위에 달린 첨을 모두 봉합하여 하피가 뒤로 늘어지는 부분의 끝을 두게 하였다. 하피는 2가닥이며 길이 5자 7치, 너비 3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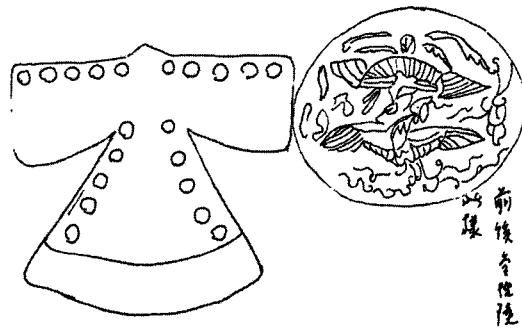
2푼으로 금(禽)을 각각 7마리씩 수놓았다. 품계에 따라 수놓는 문양의 종류가 달랐으며 앞에 4, 뒤에 3을 수놓고, 좌우 뾰족한 끝부분의 길이는 2치 7푼이다. 앞뒤로 나누어 늘이고 횡으로 청색 고름[襻]을 달아 서로 연결시킨다. 앞에 늘어지는 것은 3자 3치 5푼이고 뾰족한 끝에 추자를 하나 달았다. 뒤로 늘어지는 것은 2자 3치 5푼으로 끝은 주머니 안에 끼워 두었다. 추자의 중앙에는 花禽을 새기고 주위에는 운문을 넣었으며 문양의 종류는 하피와 같이 품계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sup>45)</sup>

『대명회전』에 규정된 대수삼은 키 160cm 정도 되는 인물이 착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이고 우정왕부인 오씨묘 출토 대수삼은 그보다 작지만 형태적 특징은 거의 유사하다. 또한 『국조속오례의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적의 전면의 좌우가 서로 마주보고 곧게 내려가며 서로 덮이지 않고 뒤길이는 치마단 보다 1척남짓 길며 소매너비와 옷의 앞길이는 가지런히 놓인다는 설명에도 부합한다. 『상방정례』에 기록된 적의 소요량은 대홍향직 35척, 내공 5척5촌으로 홀옷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분량이다. 고급펠단의 폭이 60cm내외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여 향직의 폭을 60cm로 보고 〈그림 4〉의 형태와 『대명회전』의 치수를 참고하여 옷길이 163cm, 화장 120cm, 소매너비 112cm의 대수삼을 재단하면 35척 가량이 소요된다.<sup>46)</sup> 『국조속오례의보』에서 제시한 9개의 원적을 112cm의 수구에 붙이려면 원적의 크기가 지름 12c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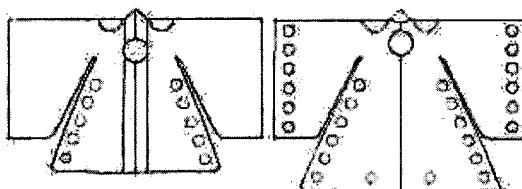
51편의 배치는 백영자<sup>47)</sup>의 연구를 필두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림 5〉로 제시하였다. 36편의 배치는 인조장열후 가례도감의궤의 〈그림 6〉을 참고하여 앞길에 5편을 놓고, 『국조속오례의보』의 51편 배치방법처럼 소매와 뒷길에 같은 개수로 배치하여 소매와 뒷길에 각각 6편, 뒷길의 도련에 2편을 놓아 〈그림 7〉로 제시하였다. 6은 음의 가운데 수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인조장열후 가례도감의궤에서 소매길이 방향으로 원적을 배치한 것은 원삼에서 흔히 보는 바와 같이 직금단의 문양이 소매길이 방향으로 제작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원적을 수놓아 붙이게 되면서



〈그림 5〉 51편을 배치한 법복용 적의



〈그림 6〉 인조장열후 가례도감의궤



〈그림 7〉 36편을 배치한 상복용 적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치 방식에 변화를 주었을 가능성 있다. 원삼이나 당의처럼 장식문양을 소매길이 방향으로 놓으려면 소매 앞·뒤로 배치해야 효과적인데 그러한 방식으로 원적을 배치하려면 36편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그림7〉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원적을 수구방향으로 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 VII. 결론

명에서는 여성관복을 예복과 상복으로 구별하였으나 조선왕실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명복이라고 하여 착용사례에 따라 구별된 복식을 착용하였

다. 조선에서는 예로부터 착용해오던 복식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명에 대한 청사와 사여관계를 고려하여 왕실여성의 적의제도를 운영했다. 명에서는 홍무4년에 외명부의 적의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조선에 사여한 왕비관복은 적의가 아니었으나 조선에서는 왕의 면복에 대응하는 왕비관복이므로 적의라고 인식하였다. 명에서 사여한 왕비관복이 소실된 후 국내에서 지어 입거나 부속품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갖추게 되면서 점차 조선식의 적의제도가 운영되었다.

명이 망한 후 인조대에 마련한 적의는 배자가 중심이 되었으나 숙종대부터 명나라 여성예복인 대삼제를 기본으로 하는 적의를 마련하였고 영조대에 적의제도가 완성되었다. 『상방정례』를 편찬하면서 적의의 용도를 구분하여 왕의 면복이나 강사포의 착용사례에 준하는 법복용 적의와 진연이나 존승에 착용하는 상복용 적의를 각각 규정하였다.

법복용 적의와 상복용 적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왕비법복에는 오조룡보, 세자빈 법복에는 사조룡보를 달지만 상복용 적의에는 모두 봉황보를 단다. 적의에 다는 원적의 문양은 평무늬가 아닌 봉황문이다. 법복용 적의에 다는 원적의 수는 36편이었으나 영조대에 51편으로 변화하였고, 숙종대에 이미 왕비적의에 소요되는 수원적의 요척이 증가하고 개수에 변화가 있었다. 상복용 적의에는 영조 이후에도 계속 36편을 달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세자빈의 경우에는 수원적의 소요량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법복용 원적의 개수가 51편으로 변화했으므로 크기를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왕비법복에 따르는 전행웃치마의 스란단은 용문이고, 세자빈 법복의 스란단은 봉문이다. 보의 문양으로 판단천대 상복용 적의에는 봉스란을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세자빈의 상복용 적의에는 전행웃치마를 갖추지 않고 겹군을 갖추었다. 왕세자빈 법복에 전행웃치마를 갖추게 된 것은 『상방정례』의 편찬이후이고, 그 이전에는 겹군을 착용했다. 왕비 적의에 전행웃치마를 갖춘 것은 숙종 인현후가례부터이다. 법복용 석에는 진주를 제거하고 상복용 적의에는 대진주 6개를 장식한 석을 갖추었으며 상복용 적의에는 법복과 달리 옥대, 패옥, 규를 갖

추지 않았다.

## 참고문헌

- 1)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皇后冠服 冊寶附, 皇妃冠服, 內命婦冠服, 皇太子妃冠服, 親王妃冠服, 公主冠服, 世子妃冠服, 郡王妃冠服, 郡主冠服 등 明史. 卷66 志42 輿服2, 卷67 志43 輿服3
- 2)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皇嬪冠服 冊附
- 3) 王宇清 (1976). 中國服裝史綱(修訂本). 台北: 中華大典編印會, p. 201.
- 4) 제직기법 중의 하나인 각사(刻絲)는 제작과정 중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붓으로 보충하여 섬세한 표현을 완성한 것이다: 김영희 (1971). 中國宋代刺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3.
- 5) 王宇清 (1976). 中國服裝史綱(修訂本). 台北: 中華大典編印會, p. 201.
- 6) 隋書. 卷12 志7 禮儀.
- 7) 舊唐書. 卷45 志25 輿服.
- 8) 宋史. 卷151 志104 輿服3.
- 9)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皇后冠服 冊寶附.
- 10) 날고 있는 모양의 평문양
- 11) 隋書. 卷12 志7 禮儀.
- 12) 舊唐書. 卷45 志25 輿服.
- 13) 宋史. 卷151 志104 輿服3.
- 14) 明史. 卷67 志43 輿服3.
- 15)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皇后冠服 冊寶附 禮服 永樂三年定: 九龍四鳳冠…, 翟衣 深青爲質 織翟文十有二等 凡一百四十八對 間以小輪花 紅領襍襍裙 織金雲龍文 紵絲紗羅隨用, 中單 玉色紗爲之 紅領襍襍裙 領織黻文十三 或用線羅, 褙膝 隨衣色 織翟爲章三等 間以小輪花四 以繒爲領緣 織金雲龍文 紵絲紗羅隨用, 玉縠圭 長七寸 主尺 刻其上 瑰縠文 黃綺約其下 別以黃袋韜之 金龍文, 玉革帶 青綺鞶 描金雲龍文 玉事件十 金事件四, 大帶 表裏俱青紅相半 其末純紅 而下垂 織金雲龍文 上以朱緣 下以綠緣 幷青綺副帶一, 綏 五采 黃 赤 白 繩 緑 繩質 間施二玉環 皆織成 小綏三色 同大綏, 玉佩二 角用玉珩一 瑰一 琥一 衡牙一 璞二 璞下有玉花 玉花下又垂二玉滴 瑰節雲龍文 描金自珩而下繫組五 貫以玉珠 行則衡牙 二滴與二璜 相觸有聲 上有金鉤 有小綏五采以副之 五采 黃 赤 白 繩 緑 繩質 織成, 青襍鳥 襪以青羅爲之 鳥用青綺 飾以描金雲龍文 早線純 每鳥首加珠五顆.
- 16)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皇后冠服 冊寶附 常服 永樂三年定: 雙鳳翊龍冠…, 大衫霞帔 衫用黃色 紵絲紗羅隨用 霞帔 深青爲質 織金雲霞龍文 或繡 或鋪翠圈金 飾以珠 紵絲紗羅隨用 玉墜子璫龍文, 四襍襍子 則褶子 深青爲質 金繡團龍文 紵絲紗羅隨用, 鞠衣 紅色 胸背雲龍文用織金 或繡 或加鋪翠 圈金 飾以珠 或素紵絲紗羅并餘色隨用, 大帶 紅線羅爲之 有緣 餘或青或綠 各隨鞠衣色, 緑襍襍子 黃色 紅領襍襍裙 皆織金采色雲龍文 紵絲紗羅隨用, 緑襍襍裙 紅色 緑緣襍襍裙 織金采色雲龍文 紵絲紗羅隨用, 玉帶 青綺鞶 描金雲龍文

- 玉事件十 金事件三, 玉花采結綬 以紅綠線羅爲結 上有  
玉綬花一 琥雲龍文綬帶 上玉墜珠六顆 并金垂頭花板四  
片 小金葉六箇 紅線羅繫帶一, 白玉雲樣玎璫二 如佩制  
每事上有金鉤一 金如意雲蓋一件 兩面鍛雲龍文 下懸紅  
組五 貢金方心雲板一件 兩面亦鍛雲龍文 俱襯以紅綺  
下垂金長頭花四件 中有小金鑑一箇 末綴白玉雲朵五,  
青襯鳥 如綵衣內制同.
- 17)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皇太子妃冠服 禮服 永樂  
三年定: 九龍四鳳冠…, 翟衣 深青爲質 織翟文九等 凡  
一百三十八對 間以小輪花 紅領標襯褶 織金雲鳳文 紵  
絲紗羅隨用, 中單 玉色紗爲之 紅領標襯褶 紹金霞文十一  
或用線羅, 蔽膝 隨衣色 織翟爲章二等 間以小輪花三  
以緞爲領緣 織金雲鳳文 紵絲紗羅隨用, 玉穀圭 長七寸  
剝其上 琥穀文 以錦約其下 并韁, 玉革帶 青綺鞚 描金  
雲鳳文 玉事件十 金事件四, 大帶 表裏俱青紅相半 其末  
純紅 而下垂 織金雲鳳文 上以朱綠 下以綠綠 并青綺副  
帶一, 綬 四采 赤 白 繚 緑 緣質 皆織成 間施二玉環  
小綬三色同大綬, 玉佩二 琮以下琢飾雲鳳文 描金 上有  
金鉤 以小綬四采副之 四采 赤 白 繚 緑 緣質 織成, 青  
襯鳥 襪以青線羅爲之 鳥用青綺 飾以描金雲鳳文 早線  
純 每鳥首加珠三顆.
- 18)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皇太子妃冠服 常服 永樂  
三年定: 燕居冠…, 大衫霞帔 衫用紅色 紵絲紗羅隨用  
霞帔深青爲質 織金 或繡 或鋪翠 圈金 飾以珠 紵絲紗羅  
隨用, 玉墜子 琥鳳文, 四襟襖子 則褶子 桃紅色 金繡  
團鳳文 紵絲紗羅隨用, 鞠衣 青色 胸背鸞鳳雲文 用織金  
或繡 或加鋪翠 圈金 飾以珠 或素 除黃外 餘色並紵絲  
紗羅隨用, 大帶 紅線羅爲之 有緣 餘或青或綠 各隨鞠衣  
色, 緣襖襖子 青色 紅領標襯褶 織金采色雲鳳文 紵絲紗  
羅隨用, 緣襯褶 紅色 緣緣襯 織金采色花鳳文 紵絲紗羅  
隨用, 玉帶 青綺鞚 描金雲鳳文 玉事件十 金事件三, 玉  
花采結綬 以紅綠線羅爲結 上有玉綬花一 琥雲鳳文綬帶  
上玉墜珠六顆 并金垂頭花板四片 小金葉六箇 紅線羅繫  
帶一, 白玉雲樣玎璫二 如佩制 每事上有金鉤一 金如意  
雲蓋一件 兩面鍛雲鳳文 下懸紅組五 貢金方心雲板一件  
兩面亦鍛雲鳳文 俱襯以紅綺 下垂金長頭花四件 中有小  
金鑑一箇 末綴白玉雲朵五, 青襯鳥 如綵衣內制同.
- 19)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親王妃冠服 禮服 永樂  
三年定: 九翟冠二頂…, 大衫霞帔 衫用大紅 紵絲紗羅隨用  
霞帔以深青爲質 金繡雲霞鳳文 紵絲紗羅隨用 金墜子亦  
鍛鳳文, 四襟襖子 則褶子 桃紅色 金繡團鳳文 紵絲紗羅  
隨用, 鞠衣 青色 如深衣制 胸背金繡雲鳳文 紵絲紗羅并  
各色隨用 惟不用黃 燕居服用素, 大帶 青線羅爲之 有緣  
或用紅羅, 玉穀圭 長七寸 剝其上 琥穀文 以錦約其下  
并韁 公主不用圭, 玉革帶 青綺鞚 描金雲鳳文 玉事件十  
金事件三, 玉花采結綬 以紅綠線羅爲結 上有玉綬花一  
琥寶相花文 綬帶上玉墜珠六顆 并金垂頭花板四片 小金  
葉六箇 紅線羅繫帶一, 玉佩二 如東宮妃佩制 琮以下琢  
雲鳳龍文 描金 上有金鉤, 青襯鳥 襪以青線羅爲之 鳥用  
青綺 飾以描金雲鳳文 早線純 每鳥首加珠三顆.
- 20)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親王妃冠服 常服 洪武四  
年定 與皇妃同.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皇妃冠  
服 冊寶附 常服 洪武三年定: 鏯鳳冠 首飾釧鉤 用金玉  
珠寶翠 諸色團衫 金繡鸞鳳 不用黃 帶用金玉犀 又定 山  
松特髻假髮花鉢 或花釧鳳冠 真紅大袖衣霞帔 紅羅裙
- 紅羅褶子 衣用織金及繡鳳文.
- 21)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世子妃冠服 永樂三年定:  
與親王妃同 惟冠用七翟.
- 22) 明史, 卷66 志42 輿服2 郡王妃冠服.
- 23)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郡王妃冠服 永樂三年定:  
七翟冠二頂 冠以早穀爲之 附以翠博山飾以大珠翟二 小  
珠翟三 翠翟四 皆口銜珠滴 冠中寶珠一座 前後珠牧丹  
花一朵 翠頭八箇翠葉三十六葉 珠翠種花簪二朵 丞以小  
連雲六片 翠頂雲一座 飾以珠五顆 珠翠雲十一片 翠口  
圈一副 金寶鉢花八箇 上用珠八顆 金翟一對 口銜珠結  
金簪一對, 珠翠牧丹花 種花 各二朵 面花二對 梅花環  
四珠環 各二對, 大衫霞帔 衫用大紅 紵絲紗羅隨用 霞帔  
以深青爲質 金繡雲霞翟文 紵絲紗羅隨用 金墜子 亦鍛  
翟文. 四襟襖子 則褶子 桃紅色 金繡翟文 紵絲紗羅隨  
用, 鞠衣 青色 胸背金繡雲翟文 紵絲紗羅并各色隨用 惟  
不用黃 燕居服 用素, 大帶 青線羅爲之 有緣 或用紅羅,  
玉穀圭 長七寸 剝其上 琥穀文 以錦約其下 并韁, 玉革  
帶 青綺鞚 描金雲翟文 玉事件十 金事件三, 玉花采結綬  
以紅綠線羅爲結 上有玉綬花一 琥寶相花文 綬帶上玉墜  
珠六顆 并金垂頭花板四片 小金葉六箇 紅線羅繫帶一,  
玉佩二 如東宮妃佩制 琮以下琢雲鳳龍文 描金 上有金  
鉤, 青襯鳥 襪以青線羅爲之 鳥用青綺 飾以描金雲鳳文  
早線純 每鳥首加珠三顆.
- 24) 明史, 卷67 志43 輿服3 命婦冠服, 大明會典에서는 圓  
衫으로 기록하고 있다.
- 25)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內命婦冠服 洪武五年定:  
三品以上 用 花釧翟衣 四品五品 用 山松特髻 大衫爲禮服  
貴人視三品以上 以 皇妃燕居冠 及 大衫霞帔爲禮服  
珠翠慶雲冠 鞠衣褶子 緣襖褶 常服.
- 26) 明史, 卷67 志43 輿服3 命婦冠服 洪武二十四年定: 一  
品 冠用金事件 珠翟五 珠牧丹開頭二 珠半開三 翠雲二  
十四片 翠牧丹葉十八片 翠口圈一副 上帶金寶鉢花八  
金翟二 口銜珠結二 一品二品 霞帔 褶子俱雲霞翟文 鍛  
花金墜子.
- 27) 大明會典, 卷61 禮部19 冠服2 命婦冠服 洪武二十四年  
定: 命婦常服 用顏色圓領衫.
- 28) 明史, 卷67 志43 輿服3 命婦冠服 洪武二十六年定: 一  
品 冠用金事件 珠翟五 珠牧丹開頭二 珠半開三 翠雲二  
十四片 翠牧丹葉十八片 翠口圈一副 上帶金寶鉢花八  
金翟二 口銜珠結二 一品二品 霞帔 褶子俱雲霞翟文 鍛  
花金墜子.
- 29) 宣祖實錄, 152권 35년(1602 임인(壬寅) / 명 만력(萬  
曆) 30년) 7월 1일 경신.
- 30) 明史, 卷320 列傳208 外國1.
- 31) 太宗實錄, 6卷, 3年(1403 癸未 / 명 영락(永樂) 1年)  
10月 27일 辛未.
- 文宗實錄, 3卷, 卽位年(1450 庚午 / 명 경태(景泰) 1  
年) 8月 3日 甲戌.
- 端宗實錄, 14卷, 3年(1455 乙亥 / 명 경태(景泰) 6年)  
4月 22日 丁酉.
- 世祖實錄, 3卷, 2年(1456 丙子 / 명 경태(景泰) 7年)  
4月 20日 己未.
- 睿宗實錄, 4卷, 1年(1469 己丑 / 명 성화(成化) 5年)  
閏2月 4日 己未.
- 成宗實錄, 5卷, 1年(1470 庚寅 / 명 성화(成化) 6年)

- 5月 1日 戊寅。  
 成宗實錄, 76卷, 8年(1477 丁酉 / 명 성화(成化) 13  
 年) 2月 4日 癸酉。  
 成宗實錄, 129卷, 12年(1481 辛丑 / 명 성화(成化) 17  
 年) 5月 16日 庚寅。  
 中宗實錄, 32卷, 13年(1518 戊寅 / 명 정덕(正德) 13  
 年) 4月 21日 己丑。  
 宣祖實錄, 161卷, 36年(1603 癸卯 / 명 만력(萬曆) 31  
 年) 4月 27日 癸丑。
- 32) 明史, 卷67 志43 輿服3 命婦冠服 洪武二十四年定: 禮服 公侯伯夫人一品同 大袖衫 真紅色 一品至五品 紵絲紗羅 六品至九品 紵羅紬絹 霞帔 脣子皆深青段 公侯及一品二品 金繡雲霞翟文…笏以象牙爲之。
- 33) 黃能馥·陳娟娟 (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p. 356.
- 34) 世祖實錄, 4卷 2年 5月 11日 (己卯).
- 35) 민중서림 (2001). 漢韓大事典. 민중서림편집국, p. 392.
- 36) 박성실 (1985). 적의제도의 변천 연구. 복식, 9, 한국복식학회, p. 28.
- 37) 덩미가례시일기.
- 38) 太宗實錄, 23卷 12年 6月 14日(丁卯).
- 39) 진종효순후가례도감의궤, 장조현경후가례도감의궤.
- 40) 增補文獻備考, 제79권 禮考26 章服1 君服 朝鮮.
- 41) 병인가례시 웃던단자, 다홍금선덕의 덕티오십일. 壬午  
千萬世東宮媽媽嘉禮時龍胸背枕佩物件記. 赤鷄 五十一  
條: 고문서집성, 12권, 장서각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42) 增補文獻備考, 제79권 禮考26 章服1 君服 朝鮮.
- 43) 趙豐 (2002). 纖織品考古新發現. 藝紗堂/服飾出版, p.  
175.
- 44) 蔡田嘉一郎 (1969). 中國古尺集說. 京都: 綜藝舍, pp.  
44-51.
- 45) 大明會典, 卷61 禮部19 冠服2 命婦冠服 洪武二十四年  
定:
- 46) 영조26년(1750)에 정리된 포백척 46.8cm를 적용했다:  
 이은경 (1993). 한국과 중국의 포백척에 관한 연구  
(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 p. 366.
- 47) 백영자 (1977). 가례도감을 통해 본 궁중법복의 변천.  
 한국의류학회지, 1(2), p. 20.